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2가단5029146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나683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2가단5029146 판결

전문

원 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원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완섭

변론종결 2022. 11. 9.

판결선고 2023. 1.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90,212,697원 및 위 금원 중 92,623,361원에 대하여 2021.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파산자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소외 D에게 E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하기로 하고, 일반자금대출로 대출금액 금100,000,000원, 대출일자 2012. 1. 31. 만기일자 2017. 1. 31. 대출금리 연13.9%, 연체금리 연25.9%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소외 D는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2021. 12. 6.을 기준으로 대출원금 92,623,361원, 이자 197,205,539원, 가지급금 383,797원의 합계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피고는 위 대출을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D의 이 사건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D가 이 사건 대출로 인한 대출금을 연체하여 A이 2013. 3. 5.을 기준으로 연체원금 및 대출이자 등 합계금 104,043,069원을 2013. 3. 8.까지 정리하라는 내용의 연체통지서를 소외 D에게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그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할 것이고, 그 기산점은 늦어도 2013. 3. 8.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2021. 12. 21.은 위 기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약관 제5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 및 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기한이익을 상실시켜 채무자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즉시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하고 있어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다는 의사표시가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위 약관은 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 채권의 즉시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것이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절차를 규정한 것이 아니어서 A이 소외 D에게 모든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연체통지서를 발송한 것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연체통지서가 소외 D에게 도달하여야 기한이익 상실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규